

2025년 하반기 지방보조금 감사 결과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원주시 자체감사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지방보조금 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감사개요

- 감사일정
 - ▶ (보건소, 평생교육원, 역사박물관) 2025. 9. 8. ~ 9. 12.(5일간)
 - ▶ (환경국) 2025. 9. 17. ~ 9. 30.(10일간)
- 감사범위: 2023년 시비 100% 민간위탁사업
- 감사방법: 실지감사 + 서면감사 병행
- 감 사 반: 청렴감사팀장 외 2명(반장 청렴감사팀장)

☐ 감사결과

구 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보건소, 평생교육원, 역사박물관	주의 2	-	주의 6
도시국	주의 1 / 시정 1 / 권고 1	회수 65천원	-

- ☐ 공개내용: 처분 4건

- ☐ 문의사항: 원주시청 감사관 청렴감사팀 (033-737-2193)

목 차

1. 지방보조사업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 소홀 3
2. 지방보조사업 집행업무처리 소홀 13
3. ♠♠♠♠♠♠♠♠ 운영 관외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21
4. □□□□ □□□□□□ 관리·감독 부적정 24

감 사 결 과 처 분 지 시 서

【부 서 명】 ★★★

【시 행 년 도】 2023 ~ 2024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지방보조사업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 소홀

【처 분 사 유】

★★★에서는 ‘●●●●●●●● ●●●●’의 지방보조사업자로 ○○○○○○
○○○○○○○○를 선정하여 [표 1]과 같이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였다.

[표 1] 지방보조금 교부 명세

(단위: 천원)

연도	지방보조사업명	지방보조사업자	보조사업내용	사업비		
				합계	보조금	자부담
2023	●●●●●●●●●●	○○○ ○○○○○○○○○○	△△△△△△△△△△	55,500	55,000	500
	●●●●●●●●●●		△△△△△△△△△△	600	500	100
	●●●●●●●●●●		△△△△△△△△△△	6,000	5,000	1,000
2024	●●●●●●●●●●	○○○ ○○○○○○○○○○	△△△△△△△△△△	50,000	49,500	500
	●●●●●●●●●●		△△△△△△△△△△	600	500	100
	●●●●●●●●●●		△△△△△△△△△△	5,500	4,500	1,000

※ ★★★ 제출자료 재구성

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여 보조사업 추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4조(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는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은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는 [표 2]과 같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사업 유형별 일정 금액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일정기간(3일 이상) 동안 수의계약 안내 공고를 한 후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표 2]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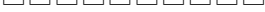
유형	종합공사	전문공사	그 밖에 공사	용역물품	견적서 제출방법
금액 기준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2인 이상 견적
	추정가격 2천만 이하(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등은 5천만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1인 견적 가능

따라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지방보조사업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에 해당하여 사업수행

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¹⁾를 통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거나 일반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표 3] 물품구매 계약 체결 현황

(단위: 원)

사업명	계약내용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체결일	계약종류
2023 		 2)	42,353,000	2023.5.15.	물 품 
2024 			24,311,000	2023.5.15.	물 품 

※ ★★ ★ 제출자료 재구성

[표 3]과 같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의 지출증빙자료를 살펴보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였거나 원주시에 계약대행을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지출품의서나 결의서가 누락되는 등 계약과 관련한 서류 없이 물품구매표준계약서(계약보증금, 지체상금을 공란)만이 첨부되어 있다.

‘2023년 ○○○○○○○○’은 2023.6.30.에 17,240,000원, 2023.11.28.에 25,113,000원 두 차례 ■■■구매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였으며 물품구매표 준계약서의 계약상대자는 ♡♡♡♡♡로 되어있으나 대표자 ●●●의 날인이 아닌 ◇◇◇이 계약서에 날인을 하였다. 또한, ‘2024년 ○○○○○○○○’의 물품구매표 준계약서는 계약기간이 2024년 5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나 계약일이 2023년 5월 15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계약상대자는 ♡♡♡♡♡로 되어있으나 대표자 ●●●의 날인이 아닌 ◇◇◇이 계약서에 날인을 하는 등 계약서의 형식상 하자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방보조사업의 주된 내용이 관내 □□□□□의 신청을 받아 ▨▨를 일괄 구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원주시에 계약대행 요청가능

2) 계약상대자 주소: 서울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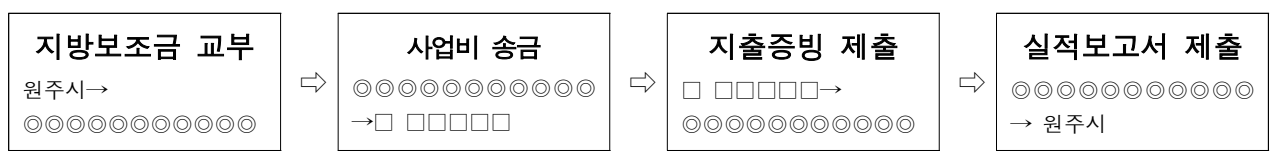
매하고 이를 배부하는 것으로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당시  구매라는 물품구매계약이 수반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사업 추진 중 이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실시하여야 했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구매 물품계약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청하거나 시정조치하였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추진하여 다수인에게 입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재위탁(재교부)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에 따르면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며,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는 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경상사업보조 통계목 지방보조사업의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교부하는 것은 불가하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고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표 4] ○○○○○○○○○○○○○○○○○○○ ○●●●●●●●●●● 추진 방법



※ ★★★ 제출자료 재구성

‘2023년 ○○○○○○○○○○’의 지방보조사업자인 ○○○○○○○○○○가 □ □□□□의 통장에 사업비를 입금하면, □ □□□□은 사업진행비, 강사비 등을 지출하고 지출증빙서를 다시 ○○○○○○○○○○에 제출하였고 ○○○○○○○○○○는 □ □□□□의 지출증빙을 취합하여 원주시에 최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의 추진 방식은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보조금을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재교부하는 사업 추진 방식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2023년의 지방보조사업의 교부조건에는 지방보조금의 제3자 위탁이나 재교부와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표 5] ○○○○○○○○○○ ○○○○○○○○○○ 추진 현황(비공개)

따라서 ★★★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했고, 만약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재교부가 필요하다면 이를 교부조건에 명시하였어야 하나 이를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다. 단순인건비 지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조(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원칙)는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강사료, 원고료, 출장 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한다고 되어 있다.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단순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고용 전에 고용목적·기간·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를 구비하고, 지급단가는 1일(8시간) 기준 2023년은 시간단가 9,62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순인건비는 지출결의서, 지급내역서, 근로계약서(해당자), 출근부(근로자 서명이 있는 업무일지로 갈음 가능), 업무일지, 계좌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023년 ○○○○○○○○○○○○○○○○○ ○●●●●●●●●●●’ 을 살펴보면, 사업 관련 ▲▲ ▲▲ ▲▲로 단순인건비를 [표 6] 과 같이 지급하였다.

[표 6] 단순인건비 지급 내역(비공개)

2023년의 단순인건비 지급단가는 시간당 9,620원임에도 지방보조사업자는 시간당 10,000원으로 지급단가를 부적정하게 적용한 사실이 있다.

또한, 단순인건비는 근로계약서와 출근부(근로자 서명이 있는 업무일지 가능), 업무일지, 계좌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하나, 지방보조사업자는 단순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지출품의서, 영수증(단순인건비를 수령하였다는 내용), 계좌이체확인증, 근로계약서만을 첨부하였다. 출근부와 업무일지가 작성·첨부되어 있지 않아 임시근로자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였는지, 근로시간 내에 실제로 근로를 하였는지 등의 객관적인 근로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통계목에서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의 임시근로자에게는 제한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 ○○ ○○ 관련 ▲▲ ▲▲를 위해 임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인건비를 지급하였는데, 해당 사업의 ▲▲ ▲▲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행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업무(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서 접수, 지출 증빙 정리, 실적보고서 작성 등의 문서 정리는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 업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 속하고, 별도로 지방보조사업에 포함된 일부 사업을 위한 것(○○○○○○○○○○이나 ○○○○○○○○○ 등 준비나 진행 보조 등)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당시 단순인건비가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인지,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였어야 하고, 단순인건비 지급이 법령에 맞게 지급되었는지 지도·점검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라. 지방보조사업 자부담금 입금 여부 확인 소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조사하여 지체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0조(지방보조사업 관리통장 등)는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는 교부신청 전에 반드시 자부담 금액을 사업비 관리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에서는 [표 7]과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부담금이 예치되어 있는 통장사본을 지방보조금 교부 전 제출받아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7] 지방보조금 자부담금 입금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지방보조사업명	사업비			교부결정일	자부담 입금일
		합계	보조금	자부담		
2023		55,500	55,000	500	2023.4.3.	2023.4.13.
		600	500	100	2023.4.3.	2023.4.13.
		6,000	5,000	1,000	2023.4.3.	2023.4.13.
2024		50,000	49,500	500	2024.5.3.	2024.5.10.
		600	500	100	2024.5.28.	2024.5.30.

마. 물품구입비 지출증빙 미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및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은 사진을 필수로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수막 및 인쇄물 등 홍보성 비용의 경우 납품사진, 배포리스트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표 8]과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모든 지출은 사전 품의서와 사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제 후 집행하여야 하고, 증빙자료는 전자 증빙 첨부를 원칙으로 하며 간이영수증은 증빙을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8] 지출증빙 부적정 현황(일부를 선정하여 확인)

(단위: 원)

비목	세목	채주	지출일자	적요(금액)	부적정 내용
사업 진행비	'23●●●●●●●● 소모품구입비	目目目	2023.10.4.	문구류 (260,000)	사진 미첨부
	'24 ●●●●●●●● 소모품구입비	目目目	2024.7.17.	문구류 (300,000)	사진 미첨부
	'23 ●●●●●●●● 소모품구입비	♫♫♫	2023.5.30.	문구류 (168,400)	사진 미첨부
	'24 ●●●●●●●● 소모품구입비	☎☎☎	2024.8.28.	부스 재료비 (479,500)	사진 미첨부
	'24●●●●●●●● 소모품구입비	@@@	2024.8.31.	재료비 (140,000)	지출품의 결의서, 사진 미첨부
	'24 ●●●●●●●● 홍보비	♪ ♪ ♪	2024.10.10.	현수막, 인쇄물 (50,000)	배포리스트, 사진 미첨부

※ ★★★ 제출자료 재구성

【처 분 지 시】 ★★★장은

- [주의] ① 앞으로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 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 ② 민간경상사업보조 통계목의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교부하는 것은 불가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교부가 필요하다면 이를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③ 법령 및 지침,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 등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 ④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여부를 확인하고,
- ⑤ 교부 및 정산검사 시에는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필요시 적정한 조치를 하는 등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 지 처 분 지 시 서

【부 서 명】 ○○○

【시 행 년 도】 2023 ~ 2024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지방보조사업 집행업무처리 소홀

【처 분 사 유】

○○○에서는 ‘▶▶ ▶▶▶▶’와 ‘◆◆ ◆◆◆ ◆◆◆◆◆’의 지방보조사업자로 ○○○○를 선정하여 [표 1], [표 2]과 같이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였다.

[표 1] 지방보조금 교부 명세

연도	지방보조사업명	지방보조사업자	보조사업내용	사업비		
				합계	보조금	자부담
2023	▶▶ ▶▶▶▶	○○○○	합계	15,379	7,000	8,379
			▶▶▶▶	7,677	3,500	4,177
			▶▶▶▶	7,702	3,500	4,202
2024	▶▶ ▶▶▶▶	○○○○	합계	16,312	6,300	10,012
			▶▶▶▶	8,156	3,150	5,006
			▶▶▶▶	8,156	3,150	5,006

[표 2] 지방보조금 교부 명세

(단위: 천원)

연도	지방보조사업명	지방보조사업자	보조사업내용	사업비		
				합계	보조금	자부담
2023	◆◆ ◆◆◆ ◆◆◆◆◆	○○○○○	◆◆ ◆◆◆ ◆◆◆◆◆	11,650	8,000	3,650
2024	◆◆ ◆◆◆ ◆◆◆◆◆	○○○○○	◆◆ ◆◆◆ ◆◆◆◆◆	10,190	7,200	2,990

※ ○●○● 제출자료 재구성

1. ▶▶ ▶▶▶▶▶

가. 단순인건비 지출 증빙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0조(지방보조사업의 시정명령)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022년도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단순인건비는 고용 전 고용목적·기간·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를 구비하여야하고, 지출결의서·지급내역서·근로계약서(해당자)·출근부(근로자 서명이 있는 업무일지로 같음 가능)·업무일지·계좌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 3] 지방보조사업 중 단순인건비 지출 부적정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지방보조금 지출내역				부적정 내용
	비목 (항)	부기 (목)	산출내역	지출 금액	
2023 ▶▶▶▶▶▶	인건비	단순 인건비	- ♪♪♪ 등 50,000원×16명×1일 - ♪♪♪ 등 50,000원×8명×1일	800 400	근로계약서, 출근부 (업무일지) 미첨부
		공연비	- ♪♪♪ 등 50,000원×8명×1일 - ♪♪♪ 등 100,000원×8명×1일	400 800	공연 확인서 미첨부
2024 ▶▶▶▶▶▶	인건비	단순 인건비	- ♪♪♪ 등 50,000원×20명×1일	1,000	업무일지 미첨부
		공연비	- ♪♪♪ 120,000원×1명×1일 - ♪♪♪ 100,000원×6명×1일	120 600	공연(지도) 확인서 미첨부

※ ○○○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에서는 2023년, 2024년 ▶▶▶▶▶▶ 사업 준비 및 진행을 위한 단순인건비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출근부(근로자 서명이 있는 업무일지), 업무일지 등 객관적으로 근로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공연자의 경우 행사에서 공연을 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함에도 [표 3]과 같이 증빙자료 없이 정산을 확정된 사실이 있다.

나. 지방보조사업 자부담금 입금 여부 확인 소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0조(지방보조사업 관리통장 등)는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는 교부신청 전에 반드시 자부담 금액을 사업비 관리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표 4] 지방보조금 자부담금 입금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지방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내용	사업비			교부 신청일	교부결정 결의일	자부담 입금일
			합계	보조금	자부담			
2023	▶▶ ▶▶▶▶	▶▶▶▶	7,702	3,500	4,202	2023.8.29.	2023.8.29.	2023.9.1.
2024	▶▶ ▶▶▶▶	▶▶▶▶	8,156	3,150	5,006	2024.4.22.	2024.4.29.	2024.4.29.
		▶▶▶▶	8,156	3,150	5,006	2024.8.27.	2024.9.3.	2024.9.4.

※ ○○○○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에서는 [표 4]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부담금이 예치되어 있는 통장사본을 지방보조금 교부 전 제출받아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

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및 집행 증빙자료 정산 소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0조(지방보조사업의 시정명령)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사업수행과 관련한 행사 및 간담회 경비 집행 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인원)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50만원 이상은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식비는 8,000원(1인/식), 다과비 3,000원(1인)(2024년 지침 기준 4,000원(1인)) 한도이며 다과비의 경우 단위 사업별로 20만원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인 홍보비를 집행하는 경우 집행등록 첨부자료에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리스트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법령·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등을 검토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지 않았거나 지출증빙서류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청하고 필요 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 5]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소홀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적정내역	
	비목	부기	산출내역	보조금 신청액		
2023 ◆◆◆◆◆	식대	중식	한식 10,000원×200명	2,000	식비	8,000원(1인/식)
	식대	기타	다과 5,000원×140명	700	다과비	3,000원(1인)
2024 ◆◆◆◆◆	식대	중식	한식 9,000원×150명	1,350	식비	8,000원(1인/식)
	식대	기타	다과 4,500원×150명	675	다과비	4,000원(1인)

※ ○○○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에서는 [표 5]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식대 중 한식 및 다과의 단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정한 단가를 초과하여 산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지 않고 그대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교부결정에 따라 적정하지 않은 단가로 지방보조금을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에서는 [표 6]과 같이 지방보조사업자가 ①주빈선물(은수저)을 구매하는 경우 지급일시, 수량, 대상이 기재된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하고, ②기념품(기념타올)을 구매하는 경우 배포리스트를 작성하여 선물이나 기념품 등이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③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을 구매 후 이를 증빙할수 있는 구매소모품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고, ④무대설치 및 차량운반비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대로 첨부되어 있지 않음에도 시정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정산을 확정된 사실이 있다.

[표 6] 지방보조사업 집행내역 지출 부적정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부적정 내용
	비목 (항)	부기 (목)	산출내역	지출금액	
2023 ◆◆◆◆◆ ◆◆◆◆◆	홍보비	기념품	기념타올 200장×5,500원	1,100	배포리스트, 전체 납품사진 미첨부
	선물	주빈 선물	은수저 5개×100,000원	500	지급관리대장 미첨부
	사업 진행비	식대	방명록 외 54,000원	54	보조세목 및 부기 오류, 구입사진 미첨부
	임차비	음향 및 행사용품	음향 1식×700,000원 테이블 16개×30,000원	700 480	임차계약서, 임차물 사진 미첨부
	운반비	무대설치	무대설치 1식×600,000원	600	증빙 자료 미첨부
2024 ◆◆◆◆◆ ◆◆◆◆◆	선물	주빈 선물	은수저 5개×120,000원	600	지급관리대장, 구입사진 미첨부
	예비비	기타	방명록 외 42,000원	42	구입사진 미첨부

※ ○○○ 제출자료 재구성

나. 지방보조사업 자부담금 입금 여부 확인 소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조사하여 지체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0조(지방보조사업 관리통장 등)는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는 교부신청 전에 반드시 자부담 금액을 사업비 관리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표 7] 지방보조금 자부담금 입금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지방보조사업명	지방보조사업자	사업비			교부 신청일	교부결정 결의일	자부담 입금일
			합계	보조금	자부담			
2023		○○○○	11,650	8,000	3,650	2023.10.11.	2023.10.24.	2023.10.25.
2024		○○○○	10,190	7,200	2,990	2024.10.18.	2024.10.24.	2024.10.24.

※ ●●●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부담금이 예치되어 있는 통장사본을 지방보조금 교부 전 제출받아야 함에도 [표 7]과 같이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지 시】 ○○○장은

[주의] 앞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지출 증빙 철저 및 적정 단가 지급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되도록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현 지 처 분 지 시 서

【부 서 명】 ◇◇◇

【시 행 년 도】 2024년

【행정상 조치】 시정, 권고

【재정상 조치】 회수 65,780원

【제 목】 ♠♠♠♠♠♠♠♠ 운영 관외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처 분 사 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0조(지방보조사업의 시정명령)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3)공무의 형편상 부득

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의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연료비의 지급 기준[여행거리(km)×유가÷연비]은 여행거리는 출발지와 출장지간의 거리, 유가는 출장 시작일의 기준유가로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에 고시된 유가, 연비는 한국에너지공단 통계에 따른 평균 연비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2024년 원주시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에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이동경비(유류비, 통행료 등)는 대중교통비(버스, 기차) 범위에서 집행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표] 관외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현황

(단위: 원)

연번	출장명(출장자)	출장지 (여비지급일)	여비 중 운임 지급액	4)출장구간 버스운임	과다 지급액	비 고
1	△△△△△△△△△△	●● (2024.4.8.)	48,534	29,600	18,930	
2	○△○△○△○△○△○△○△	●● (2024.9.11.)	56,483	29,600	26,880	
3	♣♣♣♣♣♣♣♣♣♣	□□ (2024.9.11.)	34,179	14,200	19,970	

※ ◆◆◆◆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지방보조사업자는 위 [표]와 같이 관외출장여비를 정산하면서 공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3) ①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②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③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⑤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⑥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공무원 등
4) 2024년 기준 시외버스 운임을 기준으로 함

경우 3건의 운임료 139,196원을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를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나 ◇◇◇에서는 이를 시정하지 않고 정산을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처 분 지 시】 ◇◇◇장은

[시정] 부적정하게 지급된 여비 65,780원을 즉시 회수하기 바라며, 앞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되도록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지방회계법 제55조(끝수 처리)에 따라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회계처리 시 원단위 절사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현 지 처 분 지 시 서

【부 서 명】 ♣♣♣

【시 행 년 도】 2023 ~ 2024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 ■■■■■■ 관리·감독 부적정

【처 분 사 유】

♣♣♣에서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원주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표 1]과 같이 공동주택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1] 지방보조금 교부 명세

(단위: 원)

구 분	사업명	총 사업비			비 고
		합계	보조금	자부담	
2023년	■■■■■ ■■■■■■■■	1,319,882,900	398,328,500	921,554,400	7개 분야
2024년	■■■■■ ■■■■■■■■	779,139,000	236,187,000	542,952,000	8개 분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업자에게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받아야 하며,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받주처인 공동주택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공동주택관리 시설보수 매뉴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사항을 위의 [표 2]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2]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구 분	하자담보책임기간	비 고
어린이놀이시설	2년	
철근콘크리트	3년	
전기공사	1년	
정보통신공사	1년	
상하수도(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	
아스팔트 포장	2년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에 의하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 사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반환 등)에 따르면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일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도급인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사용 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3] 공동주택 시설보수사업 검토 및 정산 부적정 내역(비공개)

그러나 ♣♣♣에서는 [표 3]과 같이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18건 시정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하자보증서 기간 산정 부적정 2건 및 누락 1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지 않은 채 정산을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18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의 적정 처리여부 등을 확인하여 정산 처리하여야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지 시】 ♣♣♣장은

[주의] 앞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되도록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